

· 소음 · 진동분야

■ **홍문관**

판례 · 수인의무의 한계

(대법 73다 1991. 74. 6. 11)

요지 피고측의 계속되는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의 조성은 수인의 한도를 넘는 불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에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7. 8월경 그 소유인 교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각 대지의 경계선과는 한치의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더욱이 같은 교사의 2층에서 6층까지의 각 난간의 끝 부분은 원고 유광년의 대지 ○, 3합과 원고 오종현의 대지 2합2작을 각각 침범하여 건축한 데다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난간의 끝부분에 높이 1미터 7센티미터 정도의 콘크리트마키 만을 설치하므로서 동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학교에서 버리는 휴지, 칠판지우개, 잉크병, 유리조각, 나무토막 기타 청소시에 생기는 각종 오물이 원고들의 각 지붕과 마당에 떨어지게 되어 지붕의 기와와 장독대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와같이 떨어진 오물들이 언제나 지붕위에 지지분하게 널려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원고들의 주택을 내려다 보고 부녀자들에게 야유와 희롱을 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불이 붙은 담배꽂이를 집어 던지는 일까지 있고 이와 같은 일은 피고가 경영하는 위 학교를 겸하고 있는 지라 낮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므로서 원고들은 밤낮 없이 소음과 불시 불면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 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위 상고이유 1점기제의 원판시 사실과 같다고 하면 이것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측의 계속되는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장소의 조성은 이른바 수인의 한도를 넘는 불법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에 안온방해 행위에 있어서의 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람이 그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 생활할을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거거 처신할 수 있음은 인간의 자유권에 속하는 침해되지 아니할 하나의 법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사용을 방해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동시에 또는 이미 그 이전에 이와같은 원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고 이는 민법 제751조 소정의 타인의 자유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측의 계속되는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의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로서 각 금 300,000만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위에서 실시한 취지에 결국 부합되는 판단으로써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하여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판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84도1563호, 84. 9. 25)

요지 구 환경보전법(1977. 12. 31 법률 제3078호)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배출에 대해서 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피고인 강○○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9. 12. 20. 경부터 1982. 6. 17.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445소재 석재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기 5대 동력 합계 15마력 상당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라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재연마기를 설치조업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환경보전법(1977. 12. 31 법률 제3078호) 제2조제 10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가)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 (나)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각 그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는 위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재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1978. 8. 22.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면서 위 연마기가 위 (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 (나)항 배출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일한 배출시설이 위 (나)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 (다)항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배출시설허가를 받으면 족한 것이지 위 (나)항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위 (다)항 배출시설설치허가는 등 2개의 허가를 2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마기를 비록 위 (다)항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나)항 부분만에 대하여서라도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이 사건 연마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 15조가 규정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는 것이므로 위 (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단정하였다.

② 그러나 위 환경보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공정도,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을 예측한 내역

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위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써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설치허가의 효력이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모두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려면 분류된 오염물질마다 그 배출량 및 배출방지시설설치내역서의 첨부 등 그 허가신청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함에 있어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을 제외한 위 (나)항 부분의 소음 및 진동의 배출부분에 대하여서만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 뿐이니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에 관한 허가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위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15조 위반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시에는 동법 제 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환경보전법 제66조제1호, 제15조제1항 위반 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 87도 1869호. 87.10.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66조제1호. 제15조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 조업한 이 사전 배출시설이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나. (1) (4) (5) 소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이에 대하여 위 법 제66조제1호, 제15조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

(대법 88누 9251. 89. 10. 24)

요지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즉 “원인자”란 모든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그 공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

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울산, 온산 공단내의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이 대기와 해류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환경오염도가 극심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울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울산, 온산공단지역주민들의 이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는 1984. 12. 31 이전에 위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로서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이 모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해기여도와 재정능력을 참작하여 위 이주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는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당연히 환경오염 중의 하나인 소음진동을 배출하고 있고 또 소음진동외에도 소량이나마 난방 취사 및 기타 가스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을 당연히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임의로 0.001%의 대기오염 기여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울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이 사건 이주사업은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호 소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인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즉 “원인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자”란 모든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그 공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환경오염사업의 원인이 되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 온산공단지역에 위치하는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

가 대상업체로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소음·진동을 소량 배출하고는 있으나 원고의 공장은 피고가 시행하는 울산, 온산공단 공해주민 이주사업의 제1단계 이주대상 지역과는 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그 소음·진동이 이 사건 제1단계 이주대상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음진동 이외에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허가설치 대상업체가 아니며 소음진동 이외의 매연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주사업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원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주사업에 있어서 같은 법 제43조제1항 소정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간접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간접보상금의 부과기준이 소론과 같고 원고의 환경오염기여율을 조사하는데 소론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여 “원인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보상금의 부과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환경보전법의 범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분야

판례·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분뇨를 버리는 행위”의 의미

(대법84도 1738호, 84. 12. 11)

요지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분뇨를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오물청소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환경보전법 제39조에 규정된 분뇨종말처리장은 오물청소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리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바, 이러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친 분뇨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분뇨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고 하여 위 환경보전법 제37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에 맞게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방출하는 방류수의 수질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 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쳐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공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소론 이○○ 등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 기재는 원심이 믿지 않고 배척

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판례·가. 구 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의 의미
나. 제1심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이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인지 여부
(대법84도2248호, 86. 7. 22)

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한다.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및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동물의 사체, 분뇨, 진개 또는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동물의 분뇨”라 함은 위에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최○석이 경영하는 도축장에는 가축의 도축해체시에 생긴 오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개의 찌꺼기 걸름정화조, 6개의 침전정화조, 1개의 약품처리조 및 오물보관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축해체작업을 할 때에 도살된 소나 돼지의 내장에서 나오는 분뇨 등은 1차로 대부분 따로 수거되어 오물보관창고에 보관되고 남은 분뇨와 혈액 등은 해체작업에 사용된 물과 함께 위에서 본 제1, 2찌꺼기 걸름정화조 및 제1 내지 제6침전정화조를 순차로 거쳐 마지막으로 약품처리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정화조 등을 거치는 동안 분뇨 등의 오물은 대부분 정화조에 침전 여과되며 마지막 약품처리조에서 또 다시 남은 찌꺼기를 침전시킨 다음 침전된 찌꺼기를 제외한 폐수만을 차량에 수거하여 이를 부근임야(개간된 밭)에 버려왔고 이와 같은 처리과정은 행정당국으로부터도 용인되어 왔으며, 이 사건 폐수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거된 폐수로서 행정당국의 용인하에 위 임야에 버렸다는 것이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김○환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증거보전으로 시행한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은 정화과정을 거친 폐수는 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 강○원이 이 사건 폐수를 버린 현장에는 물을 부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분뇨 등의 찌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폐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란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및 동물의 분뇨 자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한 것은 앞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폐수가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물의 분뇨가 조금이라도 섞여있는 폐수는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전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증 환경보전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수도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 하여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유죄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서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나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위의 수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및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 점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오물투입으로 폐사한 흑새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대법 86다카 2859, 87. 5. 12)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을 하는 동안 양어장에 흑새우를 잡아 넣을 수량은 이를 개설한 1978년도에 인근 못이나 개울 등에서 잡은 약500킬로그램정도인 사실, 흑새우는 입지조건이 맞을 때 수면 평당 2 내지 3킬로그램 정도 양식이 가능한데 이 사건 양어장은 처음부터 양어장으로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흙을 파고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흑새우와 다른 잡어를 분리하여 양식할 수 있는 시설 등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흑새우 수출업자인 소외 정연봉은 흑새우 등이 폐사하기 바로 얼마전인 1982. 4. 경 위 양어장에서 흑새우 양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수량을 약 3톤 정도로 추정하여 피고로부터의 위 수량의 흑새우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아울러 당초 흑새우를 양어장에 잡아 넣어 양식하기 시작한 이래 수년간에 걸쳐 위 양어장의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증식이 있었을 것을 감안한다면 오물 등의 투입으로 폐사한 흑새우의 양은 약 1톤 정도되는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또 폐사당시의 흑새우의 가격은 1킬로그램당 금10,000원 정도인 사실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그 전체 피해액은 금 1천만원(1000킬로그램×10,000원)이 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불법 행위를 하게 된 데는 피고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 원고의 잘못도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9백만원이 상당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나아가서 흑새우외에도 이 사건 양어장에서 기르던 잉어 1톤 가량도 폐죽음을 당하여 금 3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외에는 인정자료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궁이 가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9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 91도801, 91. 11. 12)

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 2 제1항 소정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16조의 2, 제66조 제1호, 제70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①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제16조의 2 제1항 소정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제15조의 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80. 12. 9 선고, 80도 384 판결 참조).

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구미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 8. 6.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3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의 김×규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인이던 장××으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돕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약품을 집어 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

사무실 이전 안내

한국코트텔(주)(회장·이달우)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전화: (02)3206-114 전승: (02)3206-100

(주)원광엔지니어링
주소: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7
블럭 4롯데
전화: (032)561-4100 전승: (032)561-4110

부산협의회(회장·김태병)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0 동신빌딩 201호
전화: (051)466-1022 전승: (051)441-4986

대전·충남협의회(회장·박천상)
주소: 대전시 중구 문창동 123-33 강림빌딩 4층
전화: (042)272-3730 전승: (042)273-0186

경력사원모집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응시자격

부서	인원	응시 자격	공 통
영업부	○명	•전문대 졸업 이상자 •영업경력 5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기술부	○명	•기술 및 현장 경력 3년 이상 •수질 및 대기 방지지설업 종사자	•방지지설업 종사자 우대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우측상단에 연락처 명기할 것) 1통
자기소개서 1통
3. 전형방법: 서류 심사후 면접
4. 제출기간: 1995년 4월 10일~4월 20일
5. 제출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2
문의전화: 561-3210(代)

(주)고도종합환경

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규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89. 4. 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장××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지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관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김×규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할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 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행위자가 위 김×규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위 김×규의 이 사건 도축장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의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③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